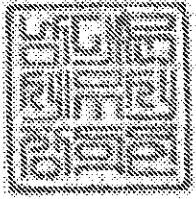


환급권리자	상호(법인명)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성명(대표자)	한제현
	사업자등록번호	203-83-00918 법인
	주민등록번호	630912-1*****
	주소(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15층)

환급관서	 남대문 세무서장
------	--

환급내용	환급사유	부가세법(일반환급)
	세 목	부가가치세 20190401 - 20190630
	환급금	₩10,000
	환급가산금	₩0
환급금계		₩10,000

지급요구일	20190823
지급요구번호	0017352
환급금 받는 방법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 우리은행 계좌 : 1006101234***

총당금액	₩0
------	----

귀하(귀사)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총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총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총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 담당자(전화: 02-2260-0429 , 02-2260-0263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 내 말 씀** 내리인 수령시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분만 유효함

1. 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받는 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 신분증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법인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발행일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추가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 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